

환경시험검사법 주요 개정사항

2020. 7.

목 차

1. 환경시험검사법 주요 개정 사항
2.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
3. 기 타

1. 환경시험검사법 주요 개정 사항

1. 환경시험검사법 주요 개정 사항(1)

측정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
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1차 적발시 등록 취소
 - *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등록, 등록증 명의 대여, 결격사유,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
-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업무 대행, 측정분석 결과 거짓 기록 등 중대 범법 행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* (기존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측정대행 업무의 재위탁 금지

- 측정대행업 계약 후 재위탁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

1. 환경시험검사법 주요 개정 사항(2)

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
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최대 1년간 국가 기술자격 정지

* 해당 기술인력은 측정기록부 및 시험성적서 상 서명한 인력 등을 말함

측정대행 계약관리 강화
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(대기·수질 1, 2종 사업장)과 측정대행업무 계약시 사전에 계약 관련 자료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

* 계약관련 자료 : 측정대행표준계약서, 과업내용서, 산출내역서 등

- 측정대행 계약관리 및 측정대행업체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·고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신설

* 대기 분야 : 한국환경공단, 수질 분야 : 환경보전협회

2.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

2.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(1)

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·검사기관

1. 대기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·검사기관

- 가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
- 나.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3조제6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
- 다. 「악취방지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
- 라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 갖추어 법 제6조제1항제1호·제3호·제4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·검사를 하는 자

2. 수질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·검사기관

- 가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
- 나. 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
- 다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 갖추어 법 제6조제1항제5호·제6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·검사를 하는 자

● 해당 규정은 3년마다 재검토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양성 현황에 따라 시험·검사기관 추가

2.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(2)

측정대행업 등록기준 중 환경 관련 학과 졸업자

- 인력기준 완화에 따라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 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등록기준에 추가
- '환경 관련 학과'는 「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」 [별표 2] 직무 분야별 학과 중 '261 환경 분야'에 속한 학과 참조

측정대행업 등록기준 중 경력자

- 인력기준 완화에 따른 책임자급 인력기준 강화로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를 등록기준에 추가
- 경력은 측정·분석 업무에 대한 공공·민간 기관에서의 이력을 모두 인정
 - * 예시) 「환경시험검사법」에 따른 시험·검사기관, 대기·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및 환경전문 공사업에서의 측정 업무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

3. 기 타

3. 기 타(1)

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 시스템

- 측정대행 업무 관련 자료를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측정 기록부 및 측정결과 등을 표준화하고, 측정대행 계약서 부터 시험성적서 까지 측정의 전과정을 디지털화 하여 행정 효율화 추진
- '20.8월 구축 완료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할 예정

측정대행업무 기술인력 법정 의무교육

-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신규 및 법령을 위반한 기술인력은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
 - * 신규 기술인력의 경우 회사 이직 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이수하면 됨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의무를 6개월 유예('20.3.1.)하였으며, 현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실시 중

3. 기 타(2)

중소 환경기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

- (사업목적) 중소기업에 “청년 디지털 일자리” 지원(최대 1,000명)
* 청년 : 만 15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- (지원자격) 중소·중견 환경기업, 디지털 관련 업무로 청년고용(8월 이후)
- (지원기간) 최대 6개월(올해 말까지 채용한 청년)
- (지원내용) 지급인건비 90%(최대 180만원) + 간접노무비(10만원)
- (접수방법) 채용계획 온라인 제출(www.work.go.kr/youthjob) → 운영기관 승인
- (문의) (주)티이에스 남현진 팀장(02-566-3092) / jin@tesgroup.co.kr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